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업종 [] 건축용 [] 공예용 [] 조경용 [] 토목용(석재채취업의 경우만 해당)	
	등록 신청 이전의 석재채취업·석제가공업 등록현황 (등록번호:)	

이
한
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